

[사건명] 행심 2017 - 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등」 처분을 취소한
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 ○○○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
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6. 12.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청구인
에게 학교에서 봉사 5일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
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2016. 12. 2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7.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 언행에 대한 일시적인 불쾌감의 표출일 뿐이고, ▲▲▲에 대한 보복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학교에서 무기명 응답을 받은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위원들이 편견을 가지고 심리를 하였으며, 모든 진술서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 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인은 ▲▲▲가 청구인과 다른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 ▲▲▲에게 이 사건 행위 등이 나온 것이고, ▲▲▲ 또한 청구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면 대학입학의 수시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의 이 사건 행동이 ▲▲▲의 언행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표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에 대한 표현자체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피청구인은 학교에서 무기명 응답을 받은 것 자체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및 개인정보보호처원에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뿐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진술을 참고하여 장시간 논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피청구인은 원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을 높음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로 경감하여 조치한 것인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6. 1학기 초에는 ▲▲▲와 친구로서 잘 지내다가 ▲▲

▲의 청구인에 대한 거짓말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졌다.

- 2) 청구인은 2016. 6월말 경 ▲▲▲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주고받다가 ▲▲▲에게 “내가 살다 살다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와 “너 같은 아이 중학교 때 2명 묻었다.” 라는 말을 하였으며, 급식실에서 ▲▲▲를 보고 화가 나 ▲▲▲ 뒷자리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 언행에 대한 일시적인 불쾌감의 표출일 뿐이고, ▲▲▲에 대한 보복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원들의 견해는 청구인의 ▲▲▲에 대한 이 사건 표현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통상 불쾌함의 표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는 ▲▲▲의

입장에서는 통상 불쾌함의 표출을 넘어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로 인하여 ▲▲▲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청구인의 이 사건 표현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청구인은 학교에서 무기명 응답을 받은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위원들이 편견을 가지고 심리를 하였으며, 모든 진술서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 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체 파악을 위하여 무기명 응답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무기명 응답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는 등 실체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무기명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是很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녹취록을 보면, 위원들의 발언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오히려 우호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진술서나 자료는 법에 의하여 비공개로 되어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이유가 없다.
- 다) 청구인은 ▲▲▲가 청구인과 다른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 ▲▲▲에게 이 사건 행위 등이 나온 것이고, ▲▲▲ 또한 청구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면 대학입학의 수시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에 대한 양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요소별 각 위원의 점수산정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 보여지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